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국회,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보험편 개정 추진

- 현행 상법의 보험관련 조항의 일부가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.
  - 현행 상법 보험편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시·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성립일부터 1개월에 불과하나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함.
  - 또한 보험금청구권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놓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권익을 보호받기에는 기간이 부족함.
  
- 따라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가능 기간을 축소시키고,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됨.
  -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,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함.
  -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,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2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.
  -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,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
  
-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입법 취지와 더불어 동 개정안이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.
  - 동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악의의 보험계약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.
  -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도덕적해이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.

(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, 국회 등, 9/13)